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(변경)서 <sup>1)</sup>								처리기간
								별도안내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가구주와의 관계		휴대전화	
대상자 (계약자) <sup>2)</sup>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가구주와의 관계		휴대전화	
	주소 <sup>3)</sup>						전자우편	
	지급계좌	계좌번호 (금융기관)				비고 <sup>4)</sup>		
	분리거주사유	[ ] 취학준비 [ ] 재학 [ ] 구직중 [ ] 재직 [ ] 기타						
	분리거주사유 (증빙 미제출시)							
동거인 1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가구주와의 관계		휴대전화 (E-MAIL)	
	분리거주사유	[ ] 취학준비 [ ] 재학 [ ] 구직중 [ ] 재직 [ ] 기타						
	분리거주사유 (증빙 미제출시)							
동거인 2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가구주와의 관계		휴대전화 (E-MAIL)	
	분리거주사유	[ ] 취학준비 [ ] 재학 [ ] 구직중 [ ] 재직 [ ] 기타						
	분리거주사유 (증빙 미제출시)							
<b>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(통장계좌번호 진위 여부 확인) 수집 및 활용</b>								확인 (√ 체크)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 통신망(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정보 등 통장계좌번호 진위 여부 확인 관련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주거급여법」 제15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에 따른 본 서식의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 ※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	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
